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15
----------	------

발의연월일 : 2017. 1. 20.

발의자 : 이채익 · 함진규 · 김도읍  
이현재 · 곽대훈 · 여상규  
홍문종 · 정갑윤 · 정운천  
주호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 임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에 보고 시 반드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 다.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제5호 및 제24호).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인력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총 이사의 정수 중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지만 조합원에 우선하여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출자제도를 도입하되, 조합원의 배당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무의결 출자금액 및 이에 대한 배당한도를 설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 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의 회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52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6항).
- 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익과 이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해당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의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55

조제7항 신설).

아.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시 입후보 자격을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제6항, 제56조 제5호, 제123조제1항).

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안 제123조제1항).

차.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임원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6개월 전부터 조합원이어야 하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

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근 이사 외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과 감사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이사는 그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비상근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사회 구성원이 해당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장, 이사, 상근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제5호 중 “조사·연구”를 “조사·연구 및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제2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3호”를 “제24호”로 한다.

#### 24.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제123조제1항 본문 중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합회의 회장을”을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를”로 한다.

제1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129조에 따라 결산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항(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이사장 연임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의 횟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을 선출할 때부터 기산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2(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① ~ ③ (생략)  <u>&lt;신 설&gt;</u></p>	<p>제12조의2(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중소기업 청장은 중소기업 협 동조합의 운영현황 등 실태파 악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제16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u>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 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 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 의 금액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 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  <u>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 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u>  <u>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 1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u></p>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생략)

<신설>

② ~ ⑥ (생략)

제50조(임원) ① (생략)

②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신설>

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50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상근 이사 외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과 감사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이사는 그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이사

<신 설>

③ ~ ⑤ (생 략)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④ 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 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비상근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  
-----

<p>기는 <u>제1항 본문</u>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임기 만료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p>	<p>-----<u>제1항 및 제2항</u>----- -----. ----- ----- -----.</p>
<p>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② (생략)</p>	<p>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임원이 되려는 <u>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u>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p>	<p>③ -----<u>자는</u>----- ----- ----- -----.</p>
<p>④·⑤ (생략) <u>&lt;신설&gt;</u></p>	<p>④·⑤ (현행과 같음) ⑥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p>
<p>⑥ (생략) 제55조(이사회) ① ~ ⑥ (생략) <u>&lt;신설&gt;</u></p>	<p>제55조(이사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사회 구성원이 해당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장, 이사, 상근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p>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4. (생략)

5. 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6. ~ 23. (생략)

<신설>

2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3호 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 ⑨ (생략)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한다.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제106조(업무)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조사·연구  
및 교육

6. ~ 23. (현행과 같음)

24.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25. ----- 제24호  
-----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  
-----대표자-----  
-----  
-----  
-----  
-----  
-----  
-----  
-----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

<p>② ~ ⑦ (생략)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 ~ ③ (생략) <u>&lt;신설&gt;</u></p>	<p><u>한 회사의 대표이사를-----</u>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u> <u>는 제129조에 따라 결산관계서</u> <u>류를 제출하거나 제130조제1항</u> <u>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중소기</u> <u>업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u> <u>치를 이용하여야 한다.</u></p>
--	---